

TIPLONews 한국어본

2023 년 1 월호(K281)

K221228Y1

K221228Z1

01 Getac 및 그 자회사는 일본 Panasonic 과 진행중이던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 대해 화해

2022 년 12 월 27 일자로 대만업체 Getac¹⁾은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Panasonic²⁾은 2019 년 6 월 5 일 미국에서 Getac 의 자회사인 Getac Tech³⁾와 Getac 이 Panasonic 의 제품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양측은 이미 본 소송에 대하여 화해하였고,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화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동 합의서의 약정을 이행하고 미국 법원에 계속중인 관련 소송에 대해 모두 취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서의 다른 화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사항으로 되어있기에 비밀로 유지된다. (2022.12)

역주:

- 1) 중국어명 神基投資控股股份有限公司, 영어명 Getac Holdings Corporation (Getac)
- 2) 영어명 Panasonic Holdings Corporation (Panasonic)
- 3) 중국어명 神基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Getac Technology Corporation (Getac Tech)

K221206Y3

K221206Y4

02 Sheraton Taitung 에 의한 LDC 객실 디자인 모방 사건, LDC 가 항소심에서 승소

LDC¹⁾는 Sheraton Taitung 이 LDC 가 경영하는 Palais de Chine 의 객실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 심과 2 심에서 승소하여 대만화폐 500 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지만, Sheraton Taitung 이 상고하였고 그 후, 대법원은 LDC 에 유리했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로 되돌려 보냈다. 환송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Sheraton Taitung 에 의한 공평 교역법위반은 인정되어, LDC 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적재산 및 상사재판소에서의 환급항소심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되었다. 실내 공간 전체의 디자인에서 보면, Palais de Chine 의 객실 가구의 디자인 및 그 선정에는, 디자이너가 가진 실내공간에 대한 예술성과 미감과 관련한 개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에게 디자이너가 전하고자 하는 아르누보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맞출 수 있어 독창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구나 장식 및 배치는 자유롭게 이동시키던가, 방의 구조를 분리하거나 할 수 있고, 또한 가구나 장식 및 배치가 형성하는 예술성과 미감은 건축 저작물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 구조 또는 사용상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관광여관업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거래습관상 어느 호텔이든 객실의 유형에 따라 가구의 배치와 쾌적함이 다르고, 나아가 디자인 특색도 달라 호텔의 등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방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여관호텔 경영자들은 객실 유형별 디자인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자본을 투자하여 보다 쾌적하고 특색을 지닌 객실 유형별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만약 완전히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객실 디자인으로 동일한 실내 디자인 형태를 보였다면, 두 호텔은 관련 기업이거나 쌍방이

가맹관계 또는 사용허락관계가 존재한다고 연상시키고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Sheraton Taitung 는 공평교역법을 위반하였고 상소는 기각한다. 본 고안은 상고할 수 있다. (2022.12)

역주:

- 1) 중국어명 雲朗觀光股份有限公司, 영어명 L'HOTEL DE CHINE CORPORATION (LDC)
- 2) 중국어명 桂田璽悅酒店股份有限公司 (臺東桂田喜來登酒店), 영어명 Sheraton Taitung Hotel (Sheraton Taitung)
- 3) 중국어명 君品酒店, 영어명 Palais de Chine Hotel (Palais de Chine)로 LDC 가 경영하는 회사



K221202Y3

03 슈퍼 마리오 등의 해적판 타이틀 수록한 게임기 판매로 대만화폐 37 만여원의 배상 명령 판결

소(蘇)씨 여성(이하, 피고)이 2020년 3월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대만화폐 150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400 개의 게임타이틀을 수록한 게임기를 1000 여대 구입해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Shopee 에서 대만화폐 199 원에 판매했다. 사이버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게임기에 수록된 타이틀 중 슈퍼마리오 등 26 편의 닌텐도 게임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해당재판에서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복제물인 점을 알고 배포한 죄로 징역 3 월에 처하고 벌금 전환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금 대만화폐 37 만 9100 원을 닌텐도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게임업체 닌텐도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고에게 배상금을 청구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게임 타이틀 단가를 대만화폐 450 원으로, 피고가 이미 120 대를 판매했으며 대만 원고가 보유한 저작권 타이틀 26 편을 침해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작권 침해 총액은 대만화폐 140 만 4000 원이지만 닌텐도는 과거 판례를 참작해 대만화폐 90 만원을 책정하여 청구했다. 그리고 상표권에 대해서는 게임기 1 대당 등록상표 9 건을 침해했으며 모방품 판매 단가 대만화폐 264 원의 200 배를 상표 1 건당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대만화폐 47 만 5200 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합계 대만화폐 137 만 5200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관은 배상금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본건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권리침해 배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게임기 판매 단가는, 피고가 자백한 평균 판매 단가인 대만화폐 199 원이고 이의 100 배를 상표당 배상액으로 계산하면, 배상액은 대만화폐 17 만 9100 원이다; 「저작권」에 대한 배상액은 대만화폐 20 만이다. 따라서, 피고는 합계 대만화폐 37 만 9100 원의 배상금을 닌텐도에 지불해야 한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2022.12)